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채취권 소멸 이후 해저 구조물의 원상회복 의무 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해저광물자원 개발 실무위원 위촉 대상 분야 확대(안 제2조의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25.5월)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분야가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서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하위 위원회인 실무위원회도 이에 맞추어 대상분야 확대

나. 원상회복 이행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안 제11조)

해저구조물 위치·규모, 관련 법령상 인허가 절차 진행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3항제2호 중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을 “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1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생략) 2. <u>해양 및 해저광물자원</u>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 ⑥ (생략)	제2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u>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u>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거하여야 한다. 1. (생략) 2. 채취·취득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등: 채취권의 효력이 소멸된 후 <u>1년</u> 이내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5년</u>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5251